

第234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6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10月21日(月)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노동부)

○金樂冀 위원

<신노사문화 추진단체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신노사문화 추진단체 재정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의 신규사업으로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노사단체에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한국노동교육원 출연을 통해 사업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C 지식기반정보화사회는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력제고가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아직도 분배중심의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신노사문화사업이 홍보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노사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한계에 도출하였고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나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참여가 소극적이었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관계의 안정없이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노사당사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유인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재정지원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배경과 목적에는 전적으로 본위원회도 공감하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면,

첫째, 책정된 사업예산 20억 원의 적정성 문제인데 동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임에

도 불구하고 정확한 재정수요에 관한 철저한 사전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액 산출근거를 밝혀주시고 노동조합 및 노사대표로 구성된 단체를 구성함에 있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단체를 구성함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행상의 지연이 우려되는 등 구체적 집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인력증원 등을 통해 기존의 노동교육원의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노동교육원의 교육사업역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교육이며, 노사협력사업비도 별도로 7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신규로 출연하는 20억 원과의 중복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비, 간담회 등은 단순 홍보사업으로 소비성 경비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에 관하여>

○한국국제노동재단의 국고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노동재단은 국제노동교류협력 촉진, 노사단체 국제활동 지원 등 민간노동외교 활성화를 위해 1996년 1월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재단 설립을 합의한 후 1997년 1월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재단 설립을 합의한 후 1997년 12월에 설립되었는데, 정부 및 경영계에서 각각 40억 원을 출연, 그 이식금으로 운영키로 하였으나 정부는 1998년까지 출연을 완료한 반면, 경영계에서는 1997년 3억 원 출연이후 현재까지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있어 국제노동재단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민간노동외교 전문기관으로서의 국제노동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노동재

단이 노·사·정 합의하에 설립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계에서 출연하기로 합의된 기금액이 조속히 출연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계에서 출연약속이 이행될 수 없다면 정부가 매년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

또는 정부가 민간기업 할당분의 기금을 출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등 재원확보방안을 조속히 장구하여 재단이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년도 국제노동재단 운영비 예산과 관련하여 당초 노동부는 기획예산처에 국제노동 재단 기금 조성액으로 2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고 대신 운영비를 2002년 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된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국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위상에 맞는 노동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외교 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저금리로 인해 재단 이식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재단의 정상적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사업운영비 지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노동부가 당초에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던 8억 6100만 원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仁相 위원

■한국노총 보조금 예산 증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	2003예산(안)		
			요구	1차조정	2차조정
계	1,828	2,078	2,326	1,840	2,040
○노조간부 교육	601	661	721	600	655
○지역별근로자상담·연수지원	600	690	788	690	690
○노동단체 정책개발지원	477	557	607	400	533
○노동단체 국제교류 활동지원	150	170	210	150	162

◎ 인건비 및 사무비 현실화를 위하여 노동부가 당초 요구했던 2326만 원이 타당함. 3억 2200만 원 증액 요청

<질의문>

한국노총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조금 예산은 올해보다 3800만 원이 줄어든 20억 4000만 원입니다. 노조간부교육, 지역별 근로자상담·연수, 노동단체 정책개발지원, 노동단체 국제교류활동지원 등 한국노총의 4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이 수행하는 4개 국고보조 사업은 당초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합리적 노동운동을 정착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사업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한국노총 지역노동교육상담소는 1989년 개소한 이후 노동자의 고충상담 해결 및 법적 구제지원업무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 동안 처리하는 상담건수가 4만 건, 행정 및 법률구제건수도 1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근로자문제까지 겹쳐 업무량

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담업무 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노동자와 노동운동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은 최근 5년간 거의 동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사무비 등을 국고에 의지하고 있는 상담소, 중앙연구원 등의 근로조건은 현재 아주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국노총의 재정자립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보조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이 상담과 교육인 점을 감안할 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와 사무비의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노동부가 당초 요구한 23억 원의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질의서(세출 신규)>

■한국노총 장학재단지원금 증액

<현황>

◎경과

- 2002년 4월 노동부에 국고보조 100억 원 신청
- 2002년 5월 노동부 기획예산처에 20억 원 요구
- 2002년 7월 기획예산처 심의결과 전액 삭감

◎장학금 지급실적

- 1987년 2억 4600만 원
- 1992년 10억 5200만 원
- 1997년 18억 원
- 1998년 24억 6100만 원
- 2002년 10억 2000만 원

◎예산요구사유

-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국고보조금 지급 실적 없음(전두환 정권 87년 한해에만 20억, 노태우 56억 원, 김영삼 100억 원)
- 한국노총 장학재단을 1977년 설립 이후 연인원 4만 8000명에 대하여 21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저금리, 국고보조 중단 등의 수입감소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었음.
- 고용시장의 변화로 비정규직 노동자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억 편성 요망

<질의문>

한국노총 장학재단 국고보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노동부는 한국노총 장학재단 국고보조금 20억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 장학재단은 77년 설립 이후 연인원 4만 8000명에 대해 21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국가도 노동단체의 장학사업의 취지를 인정하여 87년 이후부터 98년까지 매년 10억 원에서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고보조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고, 최근 저금리가 계속됨에 따라 이자수입도 감소하여 올해 장학금 지급실적이 99년 수준의 절반으로 푹 떨어졌습니다.

한국노총 장학재단 측은 현재 비정규 근로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들의 장학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장 근로자들의 수요는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노동부가 당초 요청한 20억 원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질의서(세출)>

■국제노동재단 운영지원비 증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사업	2002예산 (A)	2003예산(안) (B)	전년대비증감 (B-A)	비율(%)
[국제노동]	1485	1769	123	9.0
○주요사업비	619	850	231	37.3
국제노동재단 국제교류사업지원	400	650	250	62.5
ILO 공동세미나	130	200	70	53.8
APEC활동	89	-	△89	△100
○기본사업비	866	919	53	6.1
경상적기본사업비(국제기구활동 등)	551	553	2	0.2
기준성기본사업비(특정업무비)	16	15	△1	△0.4
노동외교(국제기구과건부담금)	299	351	52	17.4

◎설립경위

- 1996년 1월 :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노·사·정 3자가 설립추진 합의
- 1997년 7월 : 설립 발기인 회의 개최
- 1997년 11월 :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
※ 재단관련 대통령 공약사항(공약집 '21세기로 가는 길') : 국제노동재단 출연 규모의 확대를 노동관련 국제협력사업 강화

◎재정규모

- 기금출연 총액 : 43억 원(당초목표액 80억 원 : 노동부 40억, 경영계 3억)
- 현재 기금운용액 : 39억 700만 원(임차보증금 등에 일부 사용)

◎재단에 대한 국고보조 경위

- 1996년 2월 6일 재단설립실무위원회에서 정부와 경영계가 각각 40억 원씩 2년에 걸쳐 80억 원을 조성하기로 결정
- 정부는 기금조성 완료시까지 재단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997년 20억 원(기금출연분), 98년 26억 2500만 원(20억 기금출연분, 6억 2500만 원 운영비), 1999년 3억 8000(운영비), 2001년 4억 원(운영비), 2002년 4억 원(운영비 보조)

◎증액규모

- 기획예산처가 삭감한 2억 1100만 원 증액

<질의문>

국제노동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예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동 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노동재단은 1996년 1월 중앙노사협의회 합의로 민간노동외교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와 경영계가 각각 40억 원을 출연하여 그 이식금으로 운영키로 하였으나, 경영계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현재 3억 원만 출연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6월 ILO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정이사국과 아태지역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 그에 걸 맞는 노동외교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노동재단과 같은 민간의 외교활동이 필수적입니다만, 현재 기금상태로는 정상적 사업이 어렵습니다. 국제노동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국제노동재단에 대한 출연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 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98년 6억 2500만 원 99년 3억 8000만 원, 2001년에 4억 원 등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석·박사들로 구성된 우수한 사무처의 직원들이 저임금 속에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재단은 국제노동단체 및 국제기구에게 우리나라의 실태를 정확히 알려서 근거 없는 비난 활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무관리 지원사업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현지의 노사관계 및 바람직한

노무관리기법을 개발, 교육하는 등 국익을 위해 기여하는 바가 큼니다.

본 위원은 당초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된 2억 1100만 원 만큼 다시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랍니다.

<질의서(세출)>

■외국인근로자 취업관리(신규사업) 예산 증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명	2002 예산	2003 예산안		추가반영 요구액
		요 구	조 정	
외국인 연수취업자관리	-	553	300	1,443

◎사업개요

- 6개 지방청에 외국인 근로자 콜센터 설치, 전문통역·상담자를 배치하여 고충상담 등 연수취업자 관리체계 구축

◎예산 조정 경과

- 5억 53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콜센터 운영에 따른 통역수수료 3억 원만 반영
※ 8만 원×52주×주2회×36명 = 3억

◎노동부 증액요청사항

(단위 : 백만 원)

예산과목	내역	추가 요구액
계		1,153
일용잡급	외국인력명예상담원 (57,750×300일×46명)	797
관서운영비	홍보	194
여비	사업장지도점검	87
업무추진비	외국인력고용사업 주간담회비	75

◎취업관리 사업 개선방향

- 36명의 전문통역사를 6개 지방청에 분산배치할 계획이지만, 불법체류자 포함 3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46개 지방관서에서 전담상담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함
- 예산에 반영된 통역비 등은 1시간 당 1만 원인데, 시장의 통역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동시

통역 시간당 8만 원, 순차통역 시간당 10만 원)

◎증액 및 요청사항

- 증액 11억 5300만 원
- 통역사례금 인상 3억(100%)

<질의문>

외국인근로자취업관리 예산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들의 근로조건 보호가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8월 마련한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개선대책Ⅱ'에 근거하여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 예산은 3억 원으로, 전액 통역사례금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1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실의 통역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전국에 34만 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해 있는데 지방청에 있는 콜센터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46개 지방관서에 외국인근로자를 전담하는 상담원이 상주하는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 관서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통역사례금 3억 원을 6억 원으로 100% 증액하는 한편, 지방관서 상담원 46명 고용을 위하여 7억 9700만 원, 기타 사업추진에 1억 6200만 원 등 총 1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랍니다.

○朴赫圭 위원

<고용안정인프라 운영내실화 관련 문제>

2003년도 공공직업안정기관 운영관련 예산은 총 536억 6900만 원이며 이는 2002년까지 설치된 고용안정센터 136개소 운영과 일일 취업센터 16개소 운영 및 직업상담원 1886명의 인건비 등의 예산으로 2002년에 비해 12.8%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한 경우 2002년에 대비해 13.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동안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업무 중복으로 통합이 요구되었던 인력은행의 통·폐합

을 고려한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계획적인 고용안정센터 확충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공공직업안정기관의 규모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인력은행의 경우 1996년에 3개소를 설치한 이후 1998년에 20개소를 운영해오다가 2002년에 17개소가 고용안정센터에 통합되고 2003년에 모두 통합될 예정이고 고용안정센터도 1998년 99개소 설치 이후 2001년도 말 현재 16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금정센터 등 10개소를 통·폐합할 예정이며 이후 계속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증설, 통·폐합의 추세를 감안할 때 노동부는 고용안정기관의 증설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이나 지역 분배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2001년까지 고용안정센터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취업률(25%→23.6%) 등 실효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노동연구원 이 수급자 1000명에게 무작위조사결과 70.2%가 센터가 구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더욱이 2001년 자활사업지원을 위해 고용안정센터 14개소가 증설되었는데 현재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고용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무계획적인 증설과 이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고용안정센터 규모와 기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것인지,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나 정확한 수요예측이 없었던 고용안정센터의 증설 및 통합이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용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일일취업센터의 경우도 현재 지자체가 일용근로자 취업알선 업무를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어 고용안정센터에서 일용근로자 대상업무를 취급하게 되므로 일일취업센터도 고용안정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반영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데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와 함께 취업알선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직업상담원의 전문성과 사기진작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

원이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센터의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계약직인 직업상담원들이 신분불안과 적은 보수로 인해 이직률이 매년 30%로 높아 전문성을 높일 수 없고 사명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으며 사기저하로 불성실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나 철도청 등의 청원경찰과 같이 기타 보수직을 목을 변경하면 장기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책임상담원이상 일용임금에서 기타 보수직으로 변경하여 추가예산 없이 가능, 기획예산처에서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그러나 노동부가 직업상담원 인건비중 2000년 이후 연례적으로 전용과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직업상담원의 정원대로 운영하여 예산집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2000년도에 3억 77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전용되고 상담원을 정원대비 감원운영하여 68억 900만 원이 불용되었고 2001년도에 4억 3100만 원이 전용되었고 13억 14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직업상담원 운영에 노동부가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보여 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예산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신노사문화추진단체 재정지원사업관련 문제>

2003년도에 신노사문화 창출 지원사업으로 2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는데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노사평화선언 등을 실시하는 노조나 노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등에 대해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노동교육원 출연을 통해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력사업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액 산출근거가 막연하여 정확한 예산 소요액에 대한 사전분석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노사단체 구성에 있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단체를 구성하므로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상의 지연이 우려되는데 대책을 밝혀주시고 양대노총 및 사용자단체의 공동출연을 유도한다는 데 정부지원에 대한 일부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반응과 사용자단체의 협조도 어

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의 구체적인 예산집행 및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원하는 세미나나 컨설팅 그리고 노사화합 행사들이 일회성, 전시성 소비성 경비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장에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사협력사업과 별다른 차이를 찾을 수가 없어 신규 출연하는 20억 원과의 중복지원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어떻게 기존 노사협력사업과 차별화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밖에도 문제점이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특정업무비 관련 문제>

노사정위원회 운영예산은 전년도 예산 31억 34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1.2%)된 31억 7200만 원으로 이는 주로 전문직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예산 중 일반업무비와 기타 위원장 업무추진 활동과 관련된 특정업무비로 구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6억 4900만 원(일반업무비 2억 8300만 원, 특정업무비 3억 66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8.6%인 61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업무비로 편성된 ‘노·사·정 신뢰 조성 활동비’예산 1억 2200만 원은 2001년도에 특정업무비로 편성되어있던 ‘노·사·정 간 신뢰조성과 국정개혁 선도역할 유도활동비’ 예산 1억 7400만 원 중 5900만 원만이 집행되었고, 8100만 원이 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으로 전용되었으며, 34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등 집행상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2003년도에도 명칭만 바꾸어 계상된 ‘노·사·정 신뢰조성 활동비’ 1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8월까지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2억 2200만 원을 포함한 40억 9900만 원의 예산현액중 44.0%인 17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올해에도 발생할 여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2002년의 집행실적과 여성가장 실업률 감소추이를 감안할 때 2003년도 훈련대상 2200명은(2002년도 2500명) 고용보험피보험자였던 400명(예상)의 여성가장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 보다 인원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바랍니다.

특히, 자활훈련과 대상이 중복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훈련수당의 경우 동 사업이 교통비 5만 원과 15만 원의 가계보조금, 그리고 3인 한도의 가족수당 5만 원 등 25만 원이며, 자활훈련사업은 교통비 7만 원과 식비 7만 원, 그리고 훈련수당 10만 원 등으로 별반 차이가 없어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된 대상이 상당수에 이를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업예산은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정보활동비 관련 문제>

2003년도 근로감독관 정보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4억 36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근로감독관 정보활동비는 집단체불임금 발생 시 현장에서의 노사대표간담회비, 임·단협교섭 등에 따른 노조간부와의 간담회비, 집단체불·정리해고 및 노사교섭 동향 등의 파악·지도 등 다양한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필요한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1년도에 근로감독관 1015명(정원 1055명 중 기관장 40인 제외)을 지급 대상으로 24억 3600만 원을 책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감독관 정원미달 운용으로 3억 4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2002년 5월 현재 근로감독관 결원(152명)이 노동부 전체결원(104명)을 초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감독관 정원미달현상은 지방관서의 장이 실업대책 등 업무부담이 과중한 사업에 근로감독관 정원을 배정한 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파악되며 2003년도에 반영된 근로감독관 정보활동비가 원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행자부 등 인력충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바라고 이와 함께 지방관서의 부서별 정원초과인원을 재조정하여 근로감독업무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답변바랍니다.

<실직여성가장 취업훈련사업 예산 문제>

실직여성가장 취업훈련사업은 1998년부터 여성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2002년도 38억 7700만 원보다(2500명 대상)

29.3% 감액된 27억 4000만 원(2200명 대상)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2003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여성가장(약 400명 예상)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훈련대상자수를 감안하여 조정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저학력 무기능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가장의 취업능력제고와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이 용이한 직종(예 : 베이비시터, 텔레마케터, 한식조리사, 꽃집경영, 이·미용 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2001년도 결산을 보면,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 당초 4800명 중 3048명이 훈련수료하고 수료자중 868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28.5%로 98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예산집행실적에 있어서도 당초 편성된 74억 1900만 원 중 이·전용 22억 2900만 원, 중도탈락 등으로 인한 4억 9200만 원의 불용액 발생 등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2001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된 2002년도 예산의 8월까지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2억 2200만 원을 포함한 40억 9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4.0%인 17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올해에도 발생할 여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2002년의 집행실적과 여성가장 실업률 감소추이를 감안할 때 2003년도 훈련대상 2200명은(2002년도 2500명) 고용보험피보험자였던 400명(예상)의 여성가장을 훈련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 보다 인원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바랍니다.

특히 자활훈련과 대상이 중복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훈련수당의 경우 동 사업이 교통비 5만 원과 15만 원의 가계보조금, 그리고 3인 이하 한도의 가족수당 5만 원 등 25만 원이며, 자활훈련사업은 교통비 7만 원과 식비 7만 원, 그리고 훈련수당 10만 원 등으로 별반 차이가 없어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복된 대상이 상당수에 이를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업예산은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바랍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관련 문제>

2003년도 청소년 직장프로그램 사업예산은 인턴취업제에 218억 7000만 원, 연수지원제에 32억 7500만 원 그리고 기타사업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542억 93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9.5%인 57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액사유는 그동안 동 사업의 고용의 순증효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2001년도 결산에서 지적되었듯이 자활인턴제에서 250억 원을 전용하였으나 25%의 높은 중도탈락율과 15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의 부진을 예산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실업대책의 하나로서 고학력 미취업자 등에게 현장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서 특히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대생, 지방대생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채용여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먼저 2002년 8월 말 현재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811억 6900만 원 중 47.9%인 388억 9900만 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후불제로 지원되는 지원금의 성격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03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을 조기 배정받아 집행함으로써 2001년도와 같이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채용이후 이직자가 생기지 않도록 구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답변바랍니다.

이와 함께 중기청에서도 참여업체 등 몇 가지는 다르지만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이나 조건이 앞으로 같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소년 사업에 대한 수요저하로 인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중기청과 차별화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수취업제의 경우 고교·대학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연수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되어 있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학사일정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중도탈락할 확률이 예상되므로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참여에 대한 대학의 학점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답변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

<관련법개정 이전의 예산배정 문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지원사업은 현재 입법추진 중인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조기 도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로 추가하여 채용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 감원 등 고용조정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만 8000명분에 대하여 10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로 가정하여 연간예산규모를 책정하고 있는데, 법개정안의 진행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이 부진하여 2003년도 예산에서 대폭 삭감 편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신규로 편성된 이 사업예산 또한 집행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져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이와 함께 재소자 훈련지원 사업의 경우도 현재 교도소 및 소년원의 재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250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타당한 경우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이 필요한 사업이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예산과다배정 문제>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사업,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용자 및 임차지원, 그리고 직장보육교사 임금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면 첫째,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예산은 2001년도 계속사업 2개소와 2003년도 신규사업 3개소 설립비용으로 153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 32억 4900만 원에 비해 120억 7000만 원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2001년도에 편성되었던 2개소의 예산집행이 2002년 5월과 6월에야 부지매입 및 매입 추진 중으로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2003년도에 3개소를 신규편성

하고 당해연도에 부지매입과 건축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은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바랍니다.

둘째,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10개소분, 30억 원)과 임차비용(45개소분, 135억 원)을 용자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16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1년, 2002년도에 각각 20억 원씩 편성된 것에 비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2001년(1억 2500만 원 집행)과 2002(8월 현재 사업실적 없음)의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점과 용자 또는 임차비용지원 한도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기피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할지 의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고 97년 이후 용자실적이 총 21개소(23억 6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3개소분에 대해 설치 및 임차비용의 용자예산을 반영한 것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별칙규정이 없어 권고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동 규정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별칙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더욱이 영유아 보육시설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도 2001년도보다 3.7%증액된 33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 사업의 차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보건복지부소관 직업재활 사업의 예산 배정문제>

2000년 7월 1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일부(전년도 사업주 부담금의 9분의 2, 약 22%)를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164억 2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 144억 5400만 원에 비해 19억 7300만 원(13.7%)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단의 취업률(60.5%)에 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사업의 실적(43.4%)이 낮고 지원사업 내용이 구체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보다는 인건비로 지원되는 비율(49.8%)이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수행 및 관리체계가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관된 기준으로 사업 수행 및 평가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금의 수지를 고려하지 않고 법상 규정된 전년도 부담금의 2/9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액으로 공단 예산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기금적립금이 98년 이후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금운영상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실시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계획 수립 권한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시켜 기금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명예상담원 운영사업 관련 문제>

2003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중 1명씩 232명을 명예상담원으로 선발, 위촉하여 구인, 구직 정보제공, 고충상담, 용자지원 사업주 선정 참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1인당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3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명의 장애인 명예상담원이 시·군·구 전역의 장애인을 상대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답변바랍니다.

결국 이 사업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신규사업으로 일단 편성되면 계속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것이 자명한 일이므로 처음부터 제도설계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徐秉洙 위원

■노동부 예산·기금 심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출연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으로 출연되는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실 매년 거론되어 온 문제를 또 다시 지적하게 되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안이 87억 900만 원인데 조정된 예산안이 20억 원입니다. 노동부는 2002년과 비교할 때 100% 증액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억 원이면 사업 목적에 충분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의 예산 지원은 부담금 납부 의

무를 대신하는 셈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6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따라서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은 최소한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사업을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공단의 담당직원 기본급 3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 공단과 형평성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액이 필요합니까? 22억 527만 원 규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고용촉진과 재활사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72억 3827만 원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5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2000년부터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04년 이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1990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기금에 전출한 금액은 불과 145억 원입니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이 사업을 폐지할 예정입니까?

결국 적자폭이 커지게 되면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일반회계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노동부에서 애초에 요구한 예산액이 87억 9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77%가 삭감된 20억 원만이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 권고 사항이 무엇입니까? 기금운용평가는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노동부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노동부의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의에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성보호비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모성보호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일반회계 25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500억 원을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일반 재정과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이 사업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의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노동부가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완료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비용 사업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

<신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신규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재소자 훈련지원, 그리고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급 등 모두 3개의 사업입니다.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먼저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15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용안전정산망(Work-net)에 등록된 신규 구직자 중 40세 이상은 4만 9738명입니다. 전체 신규 구직자의 41.2% 수준입니다. 반면에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신규 구인인원은 2만 5530명으로 전체 신규 구인인원의 27.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장년 연령대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 12월 기준으로 할 때 실업자를 위한 훈련인 실업자재취직 훈련, 취업유망분야 훈련 등에 참여한 40세 이상인 자는 모두 1만 6951명입니다. 직업훈련자들의 평균 취업률 35.4%를 감안한다면 훈련을 수료한 40세 이상 중장년층 취업자는 60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즉,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직업훈련을 수료한 40세 이상 중장년 6000명이 취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중장년

층 3572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중장년을 채용할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중장년층의 채용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업 타당성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재소자훈련 지원사업에 대하여

재소자훈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50억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소자 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동부도 고용보험법 제25조에 재소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당연히 피보험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재소자를 수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노동부는 ‘인력양성의 수혜자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인력양성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리라면 학생들의 교육비도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교육된 학생들의 수혜자도 결국 사업주입니다.

법무부에도 교도소 훈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교정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소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의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예방시설 용자사업에 대하여>

산재예방시설용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40억 28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금 지출 총액의 5% 이상을 산업재해예방사업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예방시설용자사업은 이 전출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먼저 용자신청 사업장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642개 사업장이 용자를 신청한 반면

에 2001년도에는 용자신청 사업장이 154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6월 말을 기준으로 478개 사업장만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용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당초 사업비 1470억 5700만 원 중 67.2% 수준인 988억 6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6월 말까지 325억 2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42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의 26.2%만이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용자된 것입니다. 용자신청이 감소하는 원인은 정책자금 금리 5%가 시중자금의 대출금리와 대등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금리에 유인효과가 없다면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의 효과는 산업재해보상금의 지출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산재예방시설 용자금의 금리를 현재의 5%에서 3% 또는 3.5% 수준으로 인하하더라도 재정 지출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5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이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2002년 사업도 당초에 계획된 재원이 이미 소진되는 등 집행실적이 좋습니다. 따라서 5.5%감액 편성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2002년도에 당초의 365억 원과 2001년에 이월된 133억 원을 포함하여 498억 원을 집행한 실적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증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Clean 사업장 조성지원이 어느 정도의 재해 감소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지원결정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위험이 가장 심각한 곳이 4인 이

하 사업장입니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5%에 달하는 257만 개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또한 465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1360만 명 중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4인 이하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2001년의 산재보험금 수급자는 14만 3261명입니다. 이 중 4인 이하 사업장의 수혜자는 1만 6300명에 불과합니다. 11.4% 수준입니다. 또한 산재보험금의 전체 지급액은 1조 7446억 원인데 비해 4인 이하 사업장의 보험급여 지급액은 7.8% 정도인 1369억 원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산재예방시설 용자는 물론 Clean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은 산재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노동부는 일반 회계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이내를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2003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86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86억 7000만 원의 예산은 산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0.32%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예산액을 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까지 높이고 그 재원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위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차피 산업안전공단에 출연되는 예산이니만큼 산업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보건복지부소관 직업재활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보다 13.7% 증액된 164억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인 직업 재활 프

로그래보다 인건비로 지원되는 비율이 49.8%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의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실적이 공단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다 못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국정감사에도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은 물론 사업 관리와 지도·감독, 투자에 따른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장악하지 못한 채 사업비만 지원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2004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사업계획 수립 권한이 이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명예 상담원 운영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명예상담원 위촉·운영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예상담원 1인당 매달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3억 3475만 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시·군·구별로 1명씩 232명을 명예상담원으로 선발·위촉하여 장애인을 위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고충을 상담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명의 장애인 명예상담원이 시·군·구 전역의 장애인을 상대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명분으로 명예상담원 증원과 활동비 증액이 계속 요구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결국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업의 신규 편성을 반대합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채당금 지급에 대하여>

채당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와 비교할 때 6.6% 인상된 777억 7900만 원의 채당금 지급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의 완화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지급요건인 도산 등의 사실인정 방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

된 2430건 중 1779건 만이 도산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으려면 대상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사업주의 사업활동이 정지하고 있을 것,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을 것,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고 또한 사업활동이 정지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필요하겠지만,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까지 내세운다는 것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입법취지는 사업주에게 지급능력이 없어 임금이 체불된 퇴직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보장해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업재개 가능성 조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당금 지급수준의 강화

채당금의 지급 수준도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 6월 현재 9067명의 근로자에게 모두 329억6500만 원의 채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363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규모로는 실질적 기초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분의 임금·휴업수당과 3년분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제한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금에는 경기 악화를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2830억 4800만 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금 조성 규모를 고려할 때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의 금리인하에 대하여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보다 50억 원이 삭감된 250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2년 7월 현재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한 장기실업자는 1만 7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2.8%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도 7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업자들에게 자영업 창업을 통한 안

정적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고 중장기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취약한 장기실업자에게 년 7.5%의 이자를 매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월세 점포 창업자의 경우에는 점포 운영에 따른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상태에 놓여 있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7.5%의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의 중복운영에 대하여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대책으로 이 사업 외에도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비하여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은 근로복지 진흥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이 두 사업을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은 근로복지 사업이라기보다는 실업대책 사업이라는 점에서 고용보험기금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 복지기금에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다른 기금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계정에 편성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사업은 고용보험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통합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조 3565억 3500만 원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유자금의 규모가 359억 6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2002년도의 1조 2474억 원과 비교할 때 96.8%가 감소된 것입니다.

중복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기금 운용에도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承哲 위원

<2003년도 노동부소관 예산안·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면질의(1)

■일반회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조정필요 '실질적인 구직에 도움이 되는 인턴취업지원'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지도점검 필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하여

2002년 예산이 600억 원이었고, 2003년 요구액이 678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만 542억 9300만 원(90.5%)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면, 1인당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말 현재, 선발 9436명, 연수 중 2905명, 수료 4662명, 정규직 취업 4031명(86.5%)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연수지원을 보면, 1인당 월 30만 원 씩 참가자에게 6개월간 연수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말 현재, 선발 2만 7687명, 연수 중 2만 1398명, 수료 1825명, 취업 122명(6.6%)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9.5%인 57억 7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의 요구액에서 20%가 감액된 것인데 이렇게 감액을 가져온 것은 효과에 비해 적절하지 못한 예산운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 가운데 인턴취업지원은 올해 7월 말 현재 9436명을 선발해서 4662명이 수료를 하고 그 중에 86.5%인 4031명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2905명이 현재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옳지 못한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체인력충원계획에 따라 채용된 기존의 근로자를 인턴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미취업자나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함께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지원제의 경우는 2002년의 경우를 보면 취업인턴제보다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수료자의 6.6%에 불과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참가자에게는 사회적응력과 취업연수의 기회를 갖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취업확대라는 근본적인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단순히 경험을 쌓은 기회를 위한 정책보다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도 봅니다. 연수 지원 참여자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정규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인턴취업제가 연수지원제보다 더욱 실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인턴취업프로그램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연수지원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인턴취업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부의 예산증액요구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액요구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205를 감액편성한 것은 노동부의 대응이 미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요구액이 전년도보다 13%를 증가했는데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균형재정 달성, 노력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리수 증가율 이내에서 요구토록 세부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3%가 증가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한자리수 이상으로 요구한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것이 감액사유에 들어간 일차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고 올해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해서 811억 8900만 원 600억 원인데, 8월 말 현재 집행액이 47.9%에 불과한 것 또한 감액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획예산처에 집행액이 낮은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50%가 넘는 미집행액에 대한 추진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은 국가의 장기적 경제력 확충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시급히 해결할 과제입니다. 생산력이 높은 젊은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다소 재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청년실업을 줄이는 훌륭한 제도로 정착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2)

<신노사문화추진단체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신규사업)>

신노사문화창출지원사업의 일환인 신노사문화추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사 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정지원사업은 한국노동연구원에 출연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원에는 별도로 73억 4800만 원의 출연금이 편성되어 있고, 주요사업 중에 노사협력사업이 이미 7억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노사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신노사문화지원단체 재정지원사업과 거의 흡사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항목으로 추진하는 것은 노동연구원의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밝혀주시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이 신규사업을 연구원의 기본사업으로 추진해서 연구원의 기능확대를 통한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억 원에 대한 재정수요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노사공동의 문제 및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 진단, 컨설팅 등에 2000만 원으로 20회, 노사화합행사 등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지원에 2500만 원으로 20회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한 부문당 10회에서 20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단위노조, 지역별노조협의회, 산별노조 등인데, 우리나라 전체의 단위노조의 수가 5000여 개가 넘고, 산별 또한 40여 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역은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70여 회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인 사업을 벌이는 대상이 이처럼 적은데 이 사업이 보편성을 띤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시성 사업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3)

<외국인 연수취업자 관리와 관련하여(신규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연수취업자에 대해 취업알선, 고용사업장 지도·감독,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상담하고, 경인지역에 Call Center를 설치해서 외국인 연수자의 국가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자로 하여금 고충상담서비스를 위해 5억 53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처 심의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어 통역수수료 3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적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합법적 근로자인 연수취업자나 전문기술인력과 산업연수생,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등의 합법적 체류자 외에 26만 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할 경우 33만 68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집행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법자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앞서서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보호는 침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부는 근로자의 인권보호 또한 주요한 임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관할 기관에 맡기고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나 안전보건 등과 같은 소관업무에는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편성된 예산이 3억 원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통역에 대한 사례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당 1만 원에 고용될 전문통역사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시간당 1만 원에 고용될 통역사가 얼마나 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동시통역, 순차 통역 등은 2시간까지 기본이 45만 원 6시간까지는 60만 원에 이르며 규정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시간당 8~10만 원이라는 것이 현재의 통역비 현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황자료가 일반적이라면 이 예산에 의한 사업은 하나하나한 것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수당의 비현실성(신규)>

서면질의 (4)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자활취업촉진사업, 자활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등의 개별사업으로 구성되는 자활지원사업비가 올해 312억 2200만 원보다 52.09%가 감액된 149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대상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련예산이 축소편성된 것은 정부의 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자활취업촉진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에 비해 무려 69.2%나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대상인원을 연간 8000명을 상정해서 11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8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예산현액의 11.4%인 12억 81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 편성 당시의 계획이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대상인원을 연 2000명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전년도 8000명에서 갑자기 2000명으로 낮추어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002년 8월 현재 12억 8100만 원의 집행실적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34억 5400만 원도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활취업촉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직업훈련과 직업적응훈련은 2002년도보다 각각 45.3%가 감액된 76억 6500만 원, 36.1%가 감액된 38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 또한 56.5%, 13.7%에 불과한 2002년 8월 말 현재의 실적이 적지 않은 원인이 된 듯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활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업대상자의 자활의지를 고양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이 대상자들에게 호응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 적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자활지원사업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의 확대 필요>

◆현황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위한 예산이 2002년도의 51.5%인 112억 9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목적에서는 확대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실적을 보면, 호응도와 함께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및 질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의 실시현황을 보면 우선 호응도 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훈련입소자는 훈련목표인원을 항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탈락률 또한 매년 감소하는 반면 수료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볼 때,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취업알선과의 연계에 관심을 더욱 기울인다면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으로 삭감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낮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당초 예산요구액을 전년보다 적은 200억 7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훈련의 내실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동부가 나서서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듯이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은 이 사업자체를 옳게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감액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실적 면에서 많은 호응이 있다면 목표인원을 확대해서 많은 신청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현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출금이 20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노위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공단 업무위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36억 7600만 원과 국가 및 지자체의 2%의 무고용미달에 대한 부담금 상당액 50억 3300만 원 등 총87억 900만 원을 요구했지만 20억 원만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문제점 및 질의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관련업무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금의 재정이 나름대로 탄탄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에도 공단 위탁업무에 따라 담당직원 기본급의 30%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기금은 고용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순수입이 감소함으로써 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위탁에 따른 소요비용의 50%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예산처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에 따른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사업주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특히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도덕성에도 흠집을 내는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예산에 반영하고, 각 부처의 일반경비성 예산에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예산이 조정되어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예산처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5)

■고용보험기금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의 집행실적의 저조-제도적 방향 재설정 필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은 산업구조조정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계속고용유지와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를 지워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3년도에 각각 444억 9800만 원, 2억 9700만 원, 6억 8800만 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2001년도와 2002년의 집행실적을 보면, 이 사업이 사업주의와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2001년 971억 원 가운데 559

억 7700만 원인 57.5%가 집행되었으며 올해는 6월 말 현재 733억 9800만 원의 27.1%인 198억 6200만 원이 집행된 것을 볼 때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의 활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2003년도에는 444억 98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올해의 집행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도 기금운용계획의 구체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직지원장려금은 이직자와 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2001년에는 10억 원 가운데 4.3%인 4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올해는 516억 8900만 원 중 0.3%인 1억 3200만 원이 집행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4300만 원의 집행실적을 보인 장려금을 2002년도에 50배가 넘는 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2억 97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할 이유 또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용장려금은 2001년도에 17%의 실적률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는 24.5%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과 장려금의 계획과 실적을 볼 때, 기금운용이 치밀한 계획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획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사업들은 근본적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중소기업지원사업은 탈법적 행위나 다름 없는 제도>

◆현황

고용보험기금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주5일근무중소기업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일정기간 고용조정을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인당 60만 원 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

◆문제점 및 질의

이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정부 단독안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은 법과 예산에 따라 집행됩니다. 그

런데 관련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예산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책집행과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으로 또는 국회입법권능을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급하게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대상과 금액을 2만 8000명에 10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권의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6)

<고용촉진지원사업의 부실>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대한 2003년도의 계획이 2002년도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는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25억 3300만 원, 여성고용촉진장려금 526억 1800만 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578억 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에 대한 보장이 주목적입니다. 특히 취업애로계층은 이 고용보험사업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용촉진제도가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는 고용보험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올해의 6월 말 현재의 실적을 보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계획의 42.3%, 장기실직자고용촉진장려금 5.3%, 여성고용촉진장려금 2.7%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능력개발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실업자에 대한 취업과 실

업기간의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용촉진사업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사업의 방향과 집행계획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용촉진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고용촉진장려금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은 이 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년채용장려금’을 위해 150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572명이라는 구체적인 인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서 언급한 각종 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부실함을 볼 때 이 또한 계획대로 집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제도에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제도운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여타의 고용촉진장려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새로운 제도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과 관련하여>

◆현황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지원할 직업능력개발훈련비가 2002년도에 비해 464억 400만 원이 증가한 2340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질의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각종 훈련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재직근로자나 채용예정자들에게 한정된 것인데, 이 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개발보다는 회사를 위한 업무능력의 개발이라는 제한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각종 보직이동이나 사업주의 업종다양화 등과 같은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 회사의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또한 신규채용되는 신입사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를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의 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른다면 지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재직근로자와 채용예정자의 훈련의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

적인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수강장려금 지급에 대해 묻겠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해 수강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강과정에서 ‘정보화기초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PC와 인터넷은 이제 업무와 생활에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IT훈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정이 외국어, 일반, 정보화기초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의 선발은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치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소자훈련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재소자 훈련지원에 250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재소자들에게 직업능력을 확대해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재소자 훈련지원에 관한 조항이 없고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규정에도 없는 지원을 개정을 예상에서 미리 계획안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소자의 사회적응교육은 국가의 임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는데 굳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육아 등에 의한 여성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욕구 충족,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해 모성보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성보호지원은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3년도 계획에서는 2002년보다 819억 6500만 원이 줄어든 770억 원으로 도리어 축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732억 1200만 원이 줄어든 500억 원이며, 육아휴직급여가 87억 5300만 원이 감소한 270억 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는 반대로 지원을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예산편성 시에 육아휴직신청자가 2만여 명으로 추산해서 357억 5300만 원을 편성했으나, 2002년 7월 말 현재 겨우 171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대비 2.8%인 10억 1500만 원이 집행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육아휴직이 미진한 이유는 일부에서는 현재 2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4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노동부장관 方鏞鏞

(金樂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신노사문화추진단체 재정지원예산 20억 원의 산출근거, 노사단체 구성의 시간소요 문제, 한국노동교육원 예산과 중복문제, 소모성 예산으로 집행될 우려 등을 지적하셨음

(답 변)

□사업의 필요성

○우리 노사관계는 아직도 분배위주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 불안한 노사관계는 직접적 경제손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기피 등 경제 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001년 분류로 인한 생산차질액 2조 1200억, 200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노사관계 경쟁력 평가(47위/49)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나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참여에 소극적이며
 - 또한, 그간 신노사문화사업이 간접지원 위주

로 진행되어 노사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기존의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가 상급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반해, 신노사문화 추진단체의 재정지원은 개별사업장·지역·업종 단위의 노사협력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미 재정지원 사업을 활발히 시행중에 있음

□목적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각종 노사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 노사의 능동적 참여를 고양,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노동행정을 예방적·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하여, 분류수습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원대상사업 및 비용

○개별기업·지역·업종단위의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사협력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인 바, 예를 들면

- ▲ 노사 간 의사소통 증진 또는 의사결정과정 에 근로자 참여 고양
- ▲ 노사공동의 관심사·문제·갈등의 해결
- ▲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을 위한 노사화합행사
- ▲ 작업장 혁신 또는 조직의 효율성 증대
- ▲ 갈등관리·협상·대화기법 향상 등 문제해결 능력 배양
- ▲ 기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사업 등임

○지원하는 비용은

- ▲ 연구·자문·컨설팅·용역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 ▲ 교육·연수·회의·세미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 교재·VTR·CD 등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 ▲ 기타 노사화합행사 등 노사협력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의 공정성 확보방안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시행기관 자체인력만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 우리의 경우 대상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동부 및 노동교육원, 공익, 노·사·학계 대표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신청요건, 선정기준 등을 매뉴얼로 작성, 사전에 신청자들에게 공개하여 지원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임

□기존 한국노동교육원 각종 사업과 중복문제

- 재정지원 사업은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장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사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마련·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노동교육원이 노사관계 전문교육 등 공공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급자위주의 교육프로그램과는 그 목적과 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 다만, 한국노동교육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 기존 노동교육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집행방안

-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전시성·선심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 합리적인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 고려사항
 - ▲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목표설정의 합리성
 - ▲ 사업수행을 위한 노사의 자세
 - ▲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소요비용 신청자 공동부담 여부
 - ▲ 지원요구액의 적정성·건설성
 - ▲ 최소비용 신청 여부
 - ▲ 타부문의 선도적 역할 및 활용가능성
 - ▲ 지원의 효과성(노사관계 개선 기여도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 또한 동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노사공동단체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 기존에 설치된 노사협회의 의결이나, 노사

동의를 전제로 한 노사일방 또는 노사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산출근거

- 노사 공동의 문제 및 노사갈등해소를 위한 연구, 진단, 컨설팅 등
 - 2000만 원 = 4억 원
- 작업장 혁신 및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사공동사업 등
 - 3000만 원*10회 = 3억 원
- 노사파트너십 및 사업장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사간부·노사협의회위원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 30만 원*1,000명 = 3억 원
- 노사화합행사 등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지원
 - 2500만 원*20회 = 5억 원
-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 2500만 원*20회 = 5억 원

(질 의)

2. 국제노동재단에 대한 재계의 출연 약속이 이행될 수 없다면 정부가 매년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 또는 정부가 민간기업 할당분의 기금을 출연할 것인지를 검토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재단이 설립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재단기금 규모(40억 원)로는 재단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 단기적으로는 재단의 사업비를 매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에 대한 정부의 추가 출연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재계 측의 출연 약속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음

(질 의)

3. 저금리로 인해 국제노동재단 이식금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재단의 정상적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부가 당초에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던 8억 6100만 원이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국제노동재단기금규모(40억 원)로는 재단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
- 2003년 예산(안) 편성시에 8억 6100만 원의 국고보조를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6억 5000만 원만이 반영되었음
 - 2002년도 국고보조금 4억 원에 비하면 상당한 증액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좀 더 활발한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삭감된 부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함

(朴仁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한국노총의 재정자립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이 상담과 교육인 점을 감안, 인건비와 사무비를 현실화하는 등 정부예산편성안보다 3억 2200만 원을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노총이 수행하는 노동간부교육 등 4개 국고보조사업이 그 동안 합리적 노동운동 정착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이 상담과 교육인 점을 감안, 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사무비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정부의 관행적인 재정지원이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기는 하나
 - 한국노총의 경우 중앙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노총 건물 철거로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당초 한국노총 요구액(23억 2600만 원) 수준의 예산계상을 요청였는 바
 - 정부 재정사정에 따라 일부 삭감된 것임

(질 의)

2.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한국노총 장학재단에 대한 기금출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회보장차원에서 비정규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소 20억 원이 지원되어야 함을 지적하심

(답 변)

- 우리 부는 한국노총 장학재단의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장학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부의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삭감됨
- 우리 부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해 한해 6000여 명만이 수혜받고 있으며, 이는 지원대상(약 20만 명 추정)의 3%에 불과하여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한국노총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은 정부의 공공복지대책의 보완책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 특히, 내년부터는 비정규근로자의 자녀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당초 요구대로 20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질 의)

3. 국제노동재단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조정과정에서 삭감된 2억 1100만 원을 다시 증액해야 함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재단기금 규모(40억 원)로는 재단의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사업비의 국고보조가 불가피한 상황임
- 2003년 예산(안) 편성시에도 8억 6100만 원의 국고보조를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6억 5000만 원만이 반영되었음
- 2002년도 국고보조금 4억 원에 비하면 상당한 증액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으나
 - 좀 더 활발한 재단의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삭감된 부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함

(질 의)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에는 3억 원의 예산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통역사혜급 3억 원을 6억 원으로 100% 증액하고 지방관서 직업상담원 46명 인건비 등 총 14억 43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셨음

(답 변)

- 우리 부는 당초 예산안 편성시 전담통역상담자 인건비, 각종 홍보물 유인비,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여비, 외국인 고용사업주 간담회비 등 5억 5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 예산심의과정에서 전담통역 상담자 인건비(103목)를 통역사례금(201목)으로 조정해 3억 원만이 반영되고
 - 각종 홍보물 유인비, 지도점검여비, 간담회비 등은 전액불인정 되었음
- 또한, 당초 예산요구안은 연수취업자(2003년 약 4만 명)만을 행정대상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나, 2002년 7월 해외국적동포에 대한 취업관리제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행정대상이 대폭 증가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3억 원의 예산으로는 원활한 사업수행에 부족한 것이 사실임
 - ※ 취업관리제에 의한 해외국적동포의 취업허용규모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서비스업에 불법취업하고 있는 중국동포가 5만 명이라는 점에서 직접행정대상은 연수취업자 4만 여 명에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간접 행정대상인 산업연수생(4~5만 명)과 불법취업자(2002년 7월: 28만 1000명)도 증가추세에 있음
-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심의시 반영되지 않은 각종 홍보물 유인비 등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억 5000만원과 전담상담원 인건비, 사업장지도여비 등 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11억 원이 증액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임

(朴赫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무계획적인 증설과 이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하시고 센터규모와 기능의 효율적인 재조정 방안 및 예산반영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1998년 고용안정센터 98개소 설치 이후 센터 수가 매년 증가하여 온 것이 사실임
 - 이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년 10월

-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확대적용, 급격한 실업자 증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 현재 실업률은 2%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고용구조의 변화, 장애인·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강화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 등 고용행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우리 부는 센터조직·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안정센터(분소)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소규모센터를 인근센터와 통합, 대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40여 개로 증가한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를 기능별로 재조정·정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업무에 중점을 두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임

(질 의)
2.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일용근로자대상업무를 취급하게 되므로 일일취업센터와 고용안정센터로의 통합방안 및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물으셨음

(답 변)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 고용안정센터에 일용근로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 건설일용근로자 등의 인력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일일취업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계획중임
- 다만 일일취업센터의 경우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되어 새벽 5~7시 사이에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업무수행에 있어 차별성이 있으므로
 - 물리적인 통·폐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일일취업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질 의)
3. 직업상담원의 신분불안과 적은 보수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아 전문성장화가 어렵고, 사명감 결

여 및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이어지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해양수산부나 철도청 등의 청원 경찰과 같이 기타 보수직으로 목을 변경하는 등 신분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음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업상담원 인건비가 정부 세출예산 과목상 일용임금(103-02)으로 편성되어 있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전문성 강화가 어렵고
 - 1998년 이후 상담원의 의사에 반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없었음에도 직업상담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임
- 이에 따라 우리 부는 금년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을 위해 직업상담원의 인건비를 일용임금(103-02)에서 기타직 보수(103-01)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였으나
 - 인력운영에 경직성이 초래된다는 점과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 향후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직업상담원 신분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질 의)

4. 직업상담원의 인건비 중 2000년 이후 연례적으로 전용과 불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직업상담원 정원대로 운영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을 지적하시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예산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직업상담원 인건비가 예산상 일용임금으로 편성되고 인원도 매년 다르게 반영됨에 따라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바
 - ※ 연도별 예산상 상담원수(연도 말 현원) : 1998년 1768명(1296), 1999년 2558명(1825), 2000년 2069명(1919), 2001년 2201명(1949)
 - 매년 예산에 반영된 인원을 감안하여 신규인력을 충원하였으나, 이직자가 많이 발생하여 10% 수준의 상담원이 결원 운영되어 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음
 - ※ 연도별 인건비 불용총액(일반회계 및 고용보험) : 1998년 76억, 1999년 107억, 2000

년 77억, 2001년 60억 등

- 따라서 직업상담원 인건비예산의 과다 불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 2002년 일반회계 예산에서는 전년도 불용액을 감안, 전년 인건비 예산대비 10%수준 축소 편성하였고
 - 2003년 예산(안)은 기존에 고용보험기금으로 반영했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일괄계상하여 예산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에 반영된 인원을 운영토록 노력할 계획임.

(질 의)

5. 신노사문화추진단체 재정지원예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한국노동교육원 예산과 중복우려 등을 지적하셨음

(답 변)

□사업의 필요성

- 우리 노사관계는 아직도 분배위주의 대립과 갈등 등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 불안한 노사관계는 직접적 경제손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기피 등 경제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 2001년 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조 1200억, 200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노사관계 경쟁력 평가(47위/49)
-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나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참여에 소극적이며
 - 또한 그간 신노사문화사업이 간접지원 위주로 진행되어 노사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 기존의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가 상급단체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신노사문화추진단체의 재정지원은 개별사업장·지역·업종 단위의 노사협력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미 재정지원 사업을 활발히 시행중에 있음
- 목적
 -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각종 노사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 노사의 능동적 참여를 고양,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노동행정을 예방적·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하여, 분규수습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지원대상사업 및 비용

○개별기업·지역·업종단위의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사협력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인 바, 예를 들면

- ▲ 노사 간 의사소통 증진 또는 의사결정과정 에 근로자 참여 고양
- ▲ 노사공동의 관심사·문제·갈등의 해결
- ▲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을 위한 노사화합행사
- ▲ 작업장 혁신 또는 조직의 효율성 증대
- ▲ 갈등관리·협상·대화기법 향상 등 문제해결 능력 배양
- ▲ 기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사업 등임

○지원하는 비용은

- ▲ 연구·자문·컨설팅·용역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 ▲ 교육·연수·회의·세미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 교재·VTR·CD 등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 ▲ 기타 노사화합행사 등 노사협력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방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시행기관 자체인력만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 우리의 경우 대상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동부 및 노동교육원, 공익, 노·사·학계대표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신청요건, 선정기준 등을 매뉴얼로 작성, 사전에 신청자들에게 공개하여 지원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임

□기존 한국노동교육원 각종 사업과 중복문제

○재정지원 사업은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사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마련·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노동교육원이 노사관계 전문교육 등 공공

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급자위주의 교육프로그램과는 그 목적과 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다만 한국노동교육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 기존 노동교육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집행방안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전시성·선심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 합리적인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고려사항

- ▲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목표설정의 합리성
- ▲ 사업수행을 위한 노사의 자세
- ▲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소요비용 신청자 공동부담 여부
- ▲ 지원요구액의 적정성·건실성
- ▲ 최소비용 신청 여부
- ▲ 타부문의 선도적 역할 및 활용가능성
- ▲ 지원의 효과성(노사관계 개선 기여도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또한 동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노사공동단체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 기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노사동의를 전제로 한 노사일방 또는 노사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산출근거

○노사 공동의 문제 및 노사갈등해소를 위한 연구, 진단, 컨설팅 등

- 2000만 원*20회 = 4억 원

○작업장 혁신 및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사공동사업 등

- 3000만 원*10회 = 3억 원

○노사파트너십 및 사업장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사간부·노사협의회위원 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

- 30만 원*1,000명 = 3억 원

○노사화합행사 등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지원

- 2500만 원*20회 = 5억 원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 2500만 원*20회 = 5억 원

(질 의)

6. 2001년도에 특정업무비로 편성되어있던 “노·사·정 간 신뢰조성과 국정개혁 선도역할 유도 활동비” 예산 1억 7400만 원 중 5900만 원만 집행되고, 81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34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등 집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3년도 “노·사·정 신뢰조성 활동비” 1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의 경우 일부 예산이 전용되거나 불용된 것이 사실임
 - 이는 2001년도 중 근로시간 단축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회의 참석수당 등이 부족하게 되었으나, 다른 부문에서는 전용할 재원이 없어 부득이 업무 추진비를 절감하여 전용재원으로 활용하였고,
 - 불용의 경우 노동부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동 예산은 2001년 1억 7400만 원에서 2002년 1억 3200만 원, 2003년 예산(안)에는 1억 2200만 원으로 축소·조정되었음
- 2003년도의 동 예산은 ①민주노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류·협력 강화, ②업종별 협의체 제 마련을 위한 45개 산별 연맹 등과의 정책협의, ③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미설치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 등 개최, ④논의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워크숍·토론회 등 개최, ⑤노사관계의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노사관계 학회의 연구지원, ⑥외국인사 초청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한 해외 신인도 제고 등에 사용할 계획임
-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사·정 신뢰조성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화하여 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7. 2003년 예산에 반영된 근로감독관 활동비가 원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행자부 등

인력 충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지방관서의 부서별 정원초과 인원을 재조정하여 근로감독업무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 2002년 5월 말 현재 근로감독관 현원은 924명(정원 1,076명)으로 152명이 결원된 상태임
- 근로감독관 결원이 발생한 것은 우리 부 자체 결원(104명, 2002년 5월 말 현재)이 충원되지 않은 면도 있으나
 - 근로감독관 결원(152명)이 노동부 전체 결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지방관서장이 실업대책 등의 사업에 근로감독관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됨
 - ※ 지방노동관서의정원운용규정(제4조제1항) : 지방노동관서장은 과단위별 업무량의 증감 등 특별한 경우에는 노동부국가공무원정원표상의 과별정원에도 불구하고 과단위별로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 행자부 등 인력충원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원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 지방관서의 부서별 정원초과 인원을 근로감독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정토록하여 근로감독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8.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자 중에서 고용보험대상자로 추정된 약 400명을 감안 시 훈련대상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자활훈련생과의 대상중복 가능성을 지적하시면서 예산의 삭감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한 동 훈련은 경기활성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훈련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훈련규모를 조정하여 왔음
 - ※ 훈련규모(예산)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6,000명 (93억 원)	4,800명 (74억 원)	2,500명 (39억 원)	2,200명 (27억 원)

※ 여성가장 훈련 취업률 : 40.3%(1999년) → 36.0%(2000년) → 28.5%(2001년) → 33.9%(2002년 9월)

○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가장실업자수가 2001년 수준인 5~6만 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사업은 전년수준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03년도 훈련인원은 고용보험대상자 400여 명을 제외하더라도 2200명 정도의 규모는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봄.

※ 2002년 8월 현재 훈련실적은 1510명으로 목표인원(2500명) 대비 60.4%, 목표달성 무난 전망

※ 여성가장 실업자수(율)

1999년 8만 5000명(4.3%) → 2000년 5만 6000명(2.6%) → 2001년 5만 9000명(2.6%) → 2002년 상반기 6만 명(2.6%)

○ 아울러 자활훈련생의 경우 요건 해당 시 우리부의 여타 훈련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훈련비 등은 별도의 자활훈련예산에서 지급되고, 훈련실적 또한 별도로 파악되는 바
- 따라서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대상중복에 따른 과다책정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9. 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과 관련, 2003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 2001년과 같이 과도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채용 이후 이직자가 생기지 않도록 구인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음

(답 변)

○ 1998년 정부지원인턴제 시행이후 2001년에 예외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이 사실임

○ 금년부터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채용관행 변화에 맞게 종전의 『정부지원인턴제』를 『직장체험 프로그램』(연수지원제+인턴취업지원제)으로 전환·운영(4만 4000명, 600억 원) 중이며

- 8월 말 현재 직장체험 프로그램 선발·연수자수는 3만 9382명(인턴취업 9884명 + 연수지원 2만 9498명)에 이르는 등 목표대비(4만 4000명) 89.5%에 이르고 있으며

- 후불제인 지원금 성격을 감안할 때 하반기

예산집행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불용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03년에도 동 프로그램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예산 중도탈락률은 20%로 상향조정하고 평균 연수기간을 3.5개월 → 3개월로 현실화하였으며
- 인턴취업지원제 참여자의 정규직 채용율이 낮고 이직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를 배제하는 등 참여업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 의)

10.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과 관련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현장체험활동이 지원내용이나 조건이 같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중기청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음

(답 변)

○ 금년부터 우리 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 조기에 청소년의 다양한 직업선택과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하고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며
-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인턴취업지원제(1인당 50만원 지원)와 연수지원제(1인당 30만원 지원)로 이원화 하여 운영 중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

Program 類 型	연수기관(기업)	지원대상	지원기간
청소년 인턴 취업 지원(9000명)	5~300인 이하 중소기업 등	만 18세~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3개월+3개월
청소년 연수지원 (3만 5000명)	대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고교·대학재학생 및 졸업생	2개월 이상~6개월 이하

○반면에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은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제도임

※ 연수받는 대학생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으며 참여업체가 월 40~60만 원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고, 중소기업만이 참여대상이며 대학생에 한정되어 방학기간에만 운영

○양 제도는 사업의 목적·취지, 지원수준·내용, 참여업체 및 대상, 지원기간 등에서 성격을 달리하므로 차별화 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향후 산·학연계의 중심 정책으로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가 시행중인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 이를 위해 대학과의 연계강화, 학점인정 노력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 예정임

(질 의)
11. 연수취업지원제의 경우 학사일정과의 마찰 등으로 참가자의 중도탈락이 예상되므로 대학의 학점인정이 확대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통한 사업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우리 부에서는 향후 동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고 청소년 실업 문제의 중심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 대학과의 연계강화 및 학점인정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우선 연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 직무훈련 비용(7억 원)을 대학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2003년 예산에 반영)

- 연수참가자의 반응 및 소감문 등을 연수기관

등에 반영토록 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도모해 나가겠음

○또한 현재 42개에 이르고 있는 학점인정 대학을 내년까지 100여 개 이상으로 늘이고

- 지역 단위의 산·학·정 협의체를 시범·구성토록 하여 지역기반 민간기업의 대거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또한 동 프로그램 시행실적의 대학평가 반영, 동 프로그램 우수 활용 대학 선정·시상 등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질 의)
12.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진행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고용안정사업이 부진하여 2003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신규로 편성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지원 사업은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져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음

(답 변)

○예산편성 당시의 근로기준법개정안에 따르면 업종·규모별 시행일을 연차적으로 규정하되

- 업종·규모별 시행시기 이전이라도 노사합의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시기인 2003년 1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를 먼저 도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연간 예산 1000억 원을 책정하였음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5일근무제를 조기에 시행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고용지원금, 금융·세제지원을 통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질 의)
13. 재소자 공공직업훈련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구체적인 계

획이 미흡하여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음

(답 변)

-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써
 - 교도소 등 공공훈련기관에서 양성되는 기능인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고용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 고용보험기금으로 교도소 등 공공직업훈련시설·장비 지원을 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 향후 재소자 직업훈련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훈련직종을 개편하여 산업·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및 재소자의 훈련수요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 주기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며 교도소 훈련교사 향상훈련 지원, 훈련교재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재소자 훈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14. 2003년도 공공직장보육시설 3개소 설치와 관련하여 당해년도에 부지매입과 건축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은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음

(답 변)

- 2003년 공공직장보육시설설치관련 예산은 금년에 부지매입된 2개소의 건축비와 3개소의 추가설치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년도에 부지매입과 건축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년 중에 수요를 파악하여 설치예정지역을 미리 확정하고
 - 예산이 확정 되는 대로 부지매입 및 건축을 시작하여 2003년 중에 3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15.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임차비용의 용자예산으로 165억 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부진한 사업실적을 감안할 때 과다편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삭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음

(답 변)

- 2003년 직장보육시설 용자지원사업이 예산으로 165억 원으로 2002년 20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는 바
 - ※ 설치(건축, 매입 등)용자 : 3억×10개소, 임차비용용자 : 3억 ×45개소
 - 그동안 직장보육시설 용자지원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용자사업의 경우 이차율이 높고, 설치후에도 운영부담 등으로 사업주가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인 당면과제이므로
 - 용자이자 인하(3~3.5%→1~2%)와 용자한도액을 상향조정(3억 원→5억 원)하며
 - 보육교사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높여 설치 후 운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며
 - 직장보육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동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용자대상을 건물임대를 통한 보육시설설치에 우선하여 지원함으로써 신규건축 등에 따른 부담이 없도록 하면서도 시설확충을 도모해 나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 의)
16.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도 보육시설 예산으로 33억 원이 편성되어 사업의 차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셨음

(답 변)

-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공직장보육시설은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20개소로써 그 중 8개소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12개소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 설치채원에 따라 그 운영비도 별도로 처리되고 있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설치

된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계상된 것임

(질 의)

17.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규정과 관련하여 현행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벌칙을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음

(답 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규정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칙조항 부재로 법의 실효성이 없고

- 또한 육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근로자 모두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성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1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에는 기금수익금을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장보육시설에 기금을 투자할 수 없는 바

- 설치의무조항을 권고조항으로 바꿀 경우, 직장보육시설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현황 : 897개 기금에 3조 8794억 원 적립(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26.1% 실시)

○따라서 이 문제는 영유아보육법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조항 존속 또는 권고조항으로의 개정여부, 존속할 경우 벌칙규정 신설여부, 의무 또는 권고대상 확대여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질 의)

18. 보건복지부소관 직업재활사업이 기금수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법정금액으로 편성되어 기금감소원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사업기관선정 및 계획수립 권한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음

(답 변)

○예산집행기관인 장애인공단이 직업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현재의 사업절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당장 추진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음

○따라서 당분간은 부처 간 협의를 긴밀히 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따른 법개정 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음

(질 의)

19. 장애인 명예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1명의 상담원이 시·군·구 전역의 장애인을 상대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형식적 운영으로 실효성 보장이 어렵고, 신규사업으로 일단 편성하면 계속사업으로 운영될 것이 자명하므로 처음부터 제도설계를 제대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음

(답 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접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 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사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나

- 서비스제공 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 자치단체마다 공단지사를 신설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지역거주 장애인의 추천을 받은 덕망있는 사람을 명예상담원으로 임명하여 공단지사가 수행할 기초적인 업무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임

○장애인명예상담원은 2002년 3월부터 기존 예산을 일부 전용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상반기에 237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2년 3월부터 시·군·구별 1명씩 225명 임명

○위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 2003년도에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해보고,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2004년도에 정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2003년도 예산내역 : 시·군·구별 1명의 장애인 명예직업상담원에대해 월 10만 원의 활동비 지급(3억 3500만 원)

(徐秉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일반회계 전출금이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의 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수준인 50억 원과 공단인건비의 30%에 해당하는 22억 원 등 72억 원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억 원만 반영된 것은 노동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국가기관의 부담금 수준과 공단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87억 원을 출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으나
 - 최근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이 반영된 것이며
 - 이는 1995년부터 매년 10억 원만 출연되어 오다가 2003년도에 처음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최근 몇 년간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등 기금수지가 악화되어 고용의무대상에서 경증 산재장애자를 제외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 고용장려금을 현행수준으로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당분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 다만 근본적으로는 장애인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만으로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되어
 - 사업성격과 장애발생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재정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 이를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음
 - ※ 동 계획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질 의)

2. 모성보호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완료사업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 2003년 산전·후휴가급여예산 500억 원 중 50%인 2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요구하였으나, 예산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는
 - 모든 여성의 모성보호비용은 일반재정에서 부

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여성의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더라도 사회분담의 취지에 부합하고

-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여유가 있고, 기편성된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 예산편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2002년 9월 현재 159억 원(1만 5964명)이 집행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250억 원 정도 집행예상되어 일반회계는 125억 원 소요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취지는 『출산의 문제』를 개인이나 기업만이 아닌 국가가 적극 관여하는 데 의미가 있고

-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여 양질의 여성인력을 계속 확보하는 데 국가가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위원님 지적대로 모성보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250억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는 국가에게 모성보호비용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필요비용은 재정·사회보험에서 분담토록 하고 있음
 - ※ 2001년 7월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 시 산전·후휴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1/2을 일반재정에서 확보하도록 부대결의

○다만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에 완료사업으로 표현한 것은 2003년 일반회계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다른 재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구분편의상 분류된 것이며

- 2003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 모성보호비용 지원사업으로 5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음

(질 의)

3. 2003년에 신설하려는 ‘중장년층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은 40세 이상 훈련을 수료한 중장년층 3572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 12월 기준 40세 이상 훈련수료자가 1만 6951명이며 훈련수료자 평균취업률 35.4%를 감안할 경우 6000명이 현재도 취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 장려금 지원에 따른 실질적인 중장년층 채용 유발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 변)

- 이번에 신설하려는 ‘중장년층 훈련수료자 채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 40세 이상 중장년층에 대하여는 채용을 기피하여, 오히려 중장년층은 신속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인력수급불일치를 해소하여,
 -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중장년층의 취업애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음
-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체를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추가 고용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음
- 2001년 12월 기준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훈련수료자는 1만 6951명이나
 - 이 중 취업자는 20~30대를 포함한 평균취업률이 35.4%임을 감안할 때 6000명 수준보다는 작을 것으로 추정되며,
 - 특히, 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훨씬 적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중손실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향후 장려금 지급 시 지원요건 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원래 의도한 추가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 의)

4. 재소자 공공직업훈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법무부의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

(답 변)

-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기능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써
- 교도소 등 공공훈련기관에서 양성되는 기능인력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고용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 고용보험기금으로 교도소 등 공공직업훈련시설·장비 지원을 하는 것이 고용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이러한 논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임

(질 의)

5.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실적 부진의 원인이 되

는 현행 융자금리를 인하(5%→3%)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부에서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 이를 5%에서 3%로 인하하고자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음

(질 의)

6. 「Clean」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평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대책을 물으심

(답 변)

- 지적하신 대로 CLEAN 3D 사업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가 높아 금년에도 재원이 부족, 15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음
 - 2003년도에는 예산요구시 6000개소 지원을 목표로 41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처 협의시 345억 원으로 조정되었음
- 위원님께서 아올러 이 사업의 실제 투자효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 이러한 평가와 함께 사업 시행상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현재 한국산업안전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11월 중 완료될 예정임
-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CLEAN 3D 자금지원 과정에서 공정성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 현재 자금지원대상의 엄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노·사·정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앞으로 말씀드린 연구용역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난번 국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을 존중하여, CLEAN 3D 사업을 보완, 이 사업이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7. 4인 이하 영세소규모 기업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저조한 점과 이들 기업에 대한 산재예방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 확대를 통해 이들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투자확대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함
 - 현행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지출총액의 3%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산재예방사업에 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0.3~0.4%에 불과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는 출연금을 전년보다 25.2% 증액된 8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앞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참고로 질의 내용 중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보호에 대해서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우선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며
 - 노동부는 산재예방사업 추진에 있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최우선의 정책대상으로 삼아 CLEAN 3D 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대책을 이에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8. 복지부소관 직업재활사업이 계획수립 및 사업관리·감독, 투자에 따른 효과분석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없이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지적하시면서 계획수립권한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이관하는 대책을 촉구하셨음

(답 변)

- 예산집행기관인 장애인공단이 직업재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현재의 사업절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당장 추진은 어려움
- 따라서 당분간은 부처 간 협의를 긴밀히 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따른 법개정 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음

(질 의)

9. 장애인명예상담원사업이 형식적으로 수행될

여지가 있고 인력증원과 예산증액이 계속 요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음

(답 변)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접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 기관인 공단지사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나
 - 서비스제공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 자치단체마다 공단지사를 신설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지역거주 장애인의 추천을 받은 덕망있는 사람을 명예상담원으로 임명하여 공단지사가 수행할 정책안내, 구인·구직 등 기초적인 업무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임
 - 2002년 3월부터 기존 예산을 일부 전용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상반기에 237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2002년 3월부터 시·군·구별 1명씩 225명 임명
- 위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 2003년도에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해보고,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2004년도에 정규사업으로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질 의)

10.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에 있어서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까지 갖추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하시고 동 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 도산 등 사실인정요건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된 것은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상 사업주를 대신하여 기금에서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만큼
 -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지급받는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제도의 기본취지

에 비추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사실이며

- 실제 사업재개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실태조사 결과 동 요건 미충족으로 도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전체 실질요건 불인정 사례 중 약 18% 정도임.

(질 의)

11. 퇴직전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과 3년분의 퇴직금으로 되어 있는 현행 체당금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미흡하므로 기금여유자금 조성규모를 감안할 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체당금 지급기준은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러나 현행 3월분 임금·휴업수당 및 3년분 퇴직금 한도로 되어 있는 지급기준은

-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범위를 반영하여 동 제도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고 사업주 변제금의 원활한 회수를 고려할 때 이를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3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은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 회수 시에도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므로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근로자의 생계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연령대 별 월 100만 원 내지 17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 지급금액 한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질 의)

12.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 사업은 금년도 300억 원보다 50억 원이 삭감된 250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된 이유와 현재 7.5%의 금리 인하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실업자대부사업은 재특차입, IBRD차관, 채권발행 등을 통하여 조성한 2조 35억 원의 재원(차입자금 평균금리 7.37%)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음(대부평균 금리 6.96%)

○사업비를 금년 예산 보다 50억 원이 삭감된 250

억으로 계상한 것은

- 1998~2001년까지 채권발행, 재특차입 등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2조 35억 원)의 87.3%인 1조 7485억 원을 2004년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어 사업 재원의 규모가 줄어들고
- 최근의 실업을 하향 안정화 추세에 따라 사업 수요가 감소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이 2000년 200억 원, 2001년 206억 원, 금년도 9월 말 현재 172억 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이차손 보전 없이 자체적으로 금리인하를 할 경우 한시적 재원인 차입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금리인하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이차손 보전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하여 금리 인하 시 소요되는 이차손 비용에 대해 예산요구를 하여 왔으나 재정여건 및 최근의 실업률하락 추세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음

(질 의)

13.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사업과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고용보험기금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물으셨음

(답 변)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사업은 채권발행, IBRD차관, 재특차입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현재 재원의 상황(2004년까지 조성된 재원 87.3%를 상환)일정을 감안하여 2004년도까지 현 조성재원으로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향후 동 사업 추진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나가겠음

※ 실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려면 고용보험법 개정 필요함

(李承哲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정부지원인턴제 활용기업이 자체인력충원계획에 따라 채용된 기존의 근로자를 인턴으로 전환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고 우수인력을 채용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함께 보완대책을 물으셨음

(답 변)

- 2002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센터별로 월 5개소씩 취업지원 또는 연수지원 실시업체를 점검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난 4월 점검실시에 대한 세부계획을 각 센터에 시달한 바 있음
- 8월 말 현재 총 2800개소를 점검하여 155건을 사업취소하고 이 중 111건에 대해 2조 1600만원의 지원금을 환수하였으며 260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지시
- 금년부터는 인턴취업지원제(舊 정부지원인턴제)를 중소기업에 국한시키고 재학생 위주로 연수지원제를 운영함에 따라 부당지급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2001년 240개소 → 2002년 8월 155개소)
 - ※ 사업취소 155건중 53건은 2001년 정부지원인턴제 실시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1조 5700만 원을 환수(전체 환수금액 2조 1600만 원의 73%)
 -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내 및 점검활동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질 의)

2.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에 있어서 연수지원제 참여자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정규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음

(답 변)

- 직장체험프로그램 중 연수지원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간 실시해 오던 정부지원인턴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관행 변화에 맞게 청소년들이 조기에 현장체험을 통한 합리적인 진로설계 및 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8월 말 기준 연수지원제 총 참가자는 2만 9498명이고 이중 수료자는 7236명, 취업자는 317명으로 취업률(4.4%)이 낮은 것이 사실이나
 - 동 제도는 단순히 취업률제고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직업교육의 의의를 가지고 있고

※ 이에 따라 참가대상자를 재학생 및 직장경험 3개월 이하인 졸업생으로 제한

- 이후, 동 프로그램 참가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에 따라 연수참가자를 채용하는 기회는 점차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 특히, 연수인증제 도입, 학점인정(현재 42개 대학) 등을 통해 연수참가 기간을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취업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질 의)

3.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연수지원제는 축소하고 인턴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 그간 정부지원인턴제(現 인턴취업지원제)는 청소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순고용 효과의 상실 등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 기업의 채용방식이 급변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함에 따라 졸업 후 실업상태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적 실업대책보다는
 - 재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전적 실업대책(재학생 인턴쉽, 직업교육의 강화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교에서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강화되는 추세임
- 이에 우리 부는 2002년부터 그간 정부지원인턴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경력자를 선호하는 채용관행의 변화에 맞게
 - 졸업이전 현장체험을 강조하는 연수지원제 중심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도입 시행 중임
 - ※ 금년부터 인턴취업지원제는 중소기업에 국한해서 실시
- 향후 산·학연계의 중심축으로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수지원제 중심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 예정임

(질 의)

4. 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합해서 811억 6900만 원

인데, 2002년 8월 말 현재 집행액은 46%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낮은 집행률에 대한 이유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8월 말 현재 예산현액 812억 원 중 374억 원이 집행되어 46%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음
- 예산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 8월 말 현재 직장체험프로그램 선발·연수자 수는 3만 9382명(인턴취업 9884명 + 연수지원 2만 9498명)에 이르는 등 목표대비(4만 4000명) 89.5%에 이르고 있으며
 - 후불제인 지원금 성격을 감안할 때 하반기 예산집행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어 불용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2003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예산을 금년보다 57억 삭감 편성한 것은 금년 예산의 낮은 집행률에 기인한다기보다는
 - 고용사정의 호전에 따라 사업수요의 감소가 예측되어 예상 중도탈락율은 16% → 20%로 상향조정하고 평균 연수기간을 3.5개월 → 3개월로 현실화함에 따른 것임

(질 의)

5.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청년실업을 줄이는 제도로 정착하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물으셨음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향후 동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하고 청소년 실업 문제의 중심 제도로써 역할을 다하고자
 -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연수지원제의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 대학과의 연계강화, 학점인정 노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이를 위해 우선 연수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직무훈련 비용(7억 원)을 대학 및 연수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 연수참가자의 반응 및 소감문 등을 연수기관 등에 feed back하여 내실 있는 연수 도모
- 현재 42개에 이르고 있는 학점인정 대학을 내년까지 100여개 이상으로 늘이고
 - 지역 단위의 산·학·정 협의체를 시범·구성토록 하여 지역기반 민간기업의 대거 참여를

유도

- 또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간 제도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해 나갈 예정임

(질 의)

6. 신노사문화추진단체 예산과 한국노동교육원 기존 사업과 중복문제,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하셨음

(답 변)

□사업의 필요성

- 우리 노사관계는 아직도 분배위주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 불안한 노사관계는 직접적 경제손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기피 등 경제 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 2001년 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조 1200억, 200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노사관계 경쟁력 평가(47위/49)
-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나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참여에 소극적이며
 - 또한, 그간 신노사문화사업이 간접지원 위주로 진행되어 노사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 기존의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가 상급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반해, 신노사문화추진단체의 재정지원은 개별사업장·지역·업종 단위의 노사협력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미 재정지원사업을 활발히 시행 중에 있음

□목적

-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각종 노사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 노사의 능동적 참여를 고양,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 노동행정을 예방적·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하여, 분규수습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원대상사업 및 비용

- 개별기업·지역·업종단위의 노사가 파트너십

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사협력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인 바, 예를 들면

- ▲ 노사 간 의사소통 증진 또는 의사결정과정 에 근로자 참여 고양
- ▲ 노사공동의 관심사·문제·갈등의 해결
- ▲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을 위한 노사화합행사
- ▲ 작업장 혁신 또는 조직의 효율성 증대
- ▲ 갈등관리·협상·대화기법 향상 등 문제해 결 능력 배양
- ▲ 기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사업 등임

○지원하는 비용은

- ▲ 연구·자문·컨설팅·용역의 수행에 소요 되는 비용
- ▲ 교육·연수·회의·세미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 교재·VTR·CD 등 홍보물 제작 및 보급 에 소요되는 비용
- ▲ 기타 노사화합행사 등 노사협력증진에 소 요되는 비용

□사업의 공정성 확보방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시행기관 자체인력 만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 우리의 경우 대상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 해 노동부 및 노동교육원, 공익, 노·사·학 계대표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선정평 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신청요건, 선정기준 등을 매뉴얼로 작성, 사 전에 신청자들에게 공개하여 지원의 객관 성·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임

□기존 한국노동교육원 각종 사업과 중복문제

○재정지원 사업은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사협력 교육프 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마련·시행하는 것을 지 원하기 위한 것으로

- 노동교육원이 노사관계 전문교육 등 공공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노사를 대상으 로 시행하는 공급자위주의 교육프로그램과 는 그 목적과 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다만, 한국노동교육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 기 위한 것일 뿐

- 기존 노동교육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대 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복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집행방안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전시성·선심성 시 비를 불식시키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감안, 합리적인 세부집행기준 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고려사항

- ▲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목표설정의 합리성
- ▲ 사업수행을 위한 노사의 자세
- ▲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소요비용 신청자 공동부담 여부
- ▲ 지원요구액의 적정성·건실성
- ▲ 최소비용 신청 여부
- ▲ 타부문의 선도적 역할 및 활용가능성
- ▲ 지원의 효과성(노사관계 개선 기여도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또한 동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노사공동단체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 으며

- 기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의결이나 노사 동의를 전제로 한 노사일방 또는 노사가 공 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산출근거

- 노사 공동의 문제 및 노사갈등해소를 위한 연 구, 진단, 컨설팅 등
 - 2000만 원*20회 = 4억 원
- 작업장 혁신 및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사공동사업 등
 - 3000만 원*10회 = 3억 원
- 노사파트너십 및 사업장 의사소통 증진을 위 한 노사간부·노사협의회위원 교육, 워크숍, 세 미나 등
 - 30만 원*1,000명 = 3억 원
- 노사화합행사 등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지원
 - 2500만 원*20회 = 5억 원
-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 2500만 원*20회 = 5억 원

(질 의)

7. 외국인 연수취업자 통역상담지원 사업과 관 련하여 동시·순차통역 등은 2시간까지 기본이 45만 원, 6시간까지는 60만 원 등인데도 Call-Center 전담통역자의 시간당 수당은 1만 원에 불 과하여 고용될 전문통역사가 거의 없다고 하시 고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계

획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음

(답 변)

- 우리 부에서는 외국인 연수취업자 및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업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외국인전담창구를 설치해 취업알선, 고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 외국인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전화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청에 Call-Center를 설치하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금번에 발표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2002년 7월 15일)에 따라 연수취업자 및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를 담당하게 될 고용안정센터의 외국인 전담창구에는 직업상담원을 전담·지정해 배치하고
 - 소요예산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해 활용함으로써 충당해 나갈 계획임.
- 지방노동청에 설치될 Call-Center의 경우에는 민원실과 연계하여 통역자, 민원실근무자, 외국인근로자와 3자 통화방식 또는 스피커폰 활용에 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바
 - 통역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14개국 이상의 동남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국적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제약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전문통역자의 상시채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아래
 - 해당 국가의 유학생 또는 국내 외국어대학의 해당언어 전공학생의 시간제근무를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안으로 설계하였으며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억 원의 예산은 이들 통역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1시간당 1만 원)임
 - ※ 2003년도예산(안) : 1만 원*8시간*52주*36명 = 3억 원
- 외국인근로자의 진정사건 등과 관련한 통역수당은 외국인근로자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현재도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며
 - 금번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산업연수생 송출기관의 국내 지사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근로조건보호 업무를

위하여 통역이 필요한 경우 이들 외국 송출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음.

(질 의)

8.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관할기관에 맡기고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나 안전보건 등과 같은 소관업무에는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 우리 부는 불법체류하여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전면적용하여 보호하고 있음
- 아울러 불법취업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제기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발견하더라도
 -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후에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토록 하고 있음

(질 의)

9. 2002년 자활취업촉진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예산편성 당시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내년도의 대상인원을 전년도 8000명에서 2000명으로 낮추어 잡은 이유와 2002년 8월 현재 실적을 감안할 때 내년도 34억 5400만 원도 과다계상 되었다면 자활취업촉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으셨음

(답 변)

- 2002년도 자활취업촉진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취업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2001년 7월 7078명→2002년 6월 2937명)와 보충급여제 실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 유인 미흡 등에 기인함
 - 2002년 예산편성은 당시(2001년 7월) 보건복지부 추계 취업대상자가 1만 4000명이고 월평균 의뢰자가 1200명 정도되어 분기별 투입인원은 2000명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올해 들어 지자체에서 의뢰되는 월평균 취업대상자수가 592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사업실적이 부진
- 2003년 예산편성은 금년도 사업집행실적 부진(8월 현재 투입인원 1012명 집행예산 12억 8100

만 원)을 감안하여 2002년보다 분기별 투입인원을 2000명에서 500명으로 하여 3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 자활취업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에 ▲취업알선 2개월 이상 투입자(9월 말 현재 400명)의 자활취업촉진사업 의무 투입, ▲근무조건 완화(주5일근무에서 주3일 이상 근무)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따라서 2003년도 예산액 35억 원(분기당 500명)은 금년도 집행 실적(25억 원)과 새로운 제도개선을 통한 추가 인원 확보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큰 무리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002년 1/4분 320명, 2/4분기 336명, 3/4분기 356명

(질 의)

10. 자활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업대상자의 자활의지를 고양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음

(답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활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업대상자의 자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됨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고양 및 근로유인을 위해 2001년부터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01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3개 시·군·구(서울 성북구, 안산시, 당진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5개 모형, 소득공제율 0~30% 차등) 근로유인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 현재 200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전국 16개 시·군·구 158개 읍·면·동에(2001년과 같은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2003년에는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공제율 30~50%로 상향조정하고 전국적으로 상시근로자 및 근로소득과약계층 5만 명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질 의)

11.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444억 목표)의 구체적인 근거를 물으셨음

(답 변)

○고용유지지원금은 2000년 293억 원, 2001년 559억 원의 집행 실적을 보였으나

-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 262억 원으로 목표(733억 원)대비 실적이 부진함

○실적 부진 이유는 실업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 및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태 호전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2003년도 예산 444억 원은 2001년도 결산액(559억 원) 및 2002년도 5월 현재 실적(182억 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질 의)

12. 전직지원장려금은 2001년도에 비하여 2002년도에는 50배가 넘는 516억 원으로 계획을 세운 이유 및 2003년도에는 2억 97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이유를 물으셨음

(답 변)

○전직지원장려금제도는 2001년 7월 동 제도를 도입하면서

- 2000년 고용조정 이직자 29만 명의 20%가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계하여 2002년도 예산을 516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2003년도에는 2002년도 5월 현재 사업실적(121백만 원)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대폭 축소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음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 우선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 금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전직지원장려금제도 활용실태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질 의)

13. 고용안정사업 중에서 계획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음

(답 변)

○고용안정사업 중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외에는 전반적으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처럼 2001년

7월 제도개선(장기실업자요건 12개월 → 6개월)으로 2001년 29억 원 집행에서 금년도 9월 현재 54억 원 집행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되는 사업도 있음

- 전직지원장려금의 경우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전직지원장려금제도 활용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고용안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 「고용안정사업 효율성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질 의)
14. 고용촉진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은 2002년 9월 현재 378억 1300만 원으로 예산대비 20.8%에 불과한 실정임
-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업주는 저학력, 경력·기술부족 등을 이유로 취약계층 채용을 기피하고, 구직자들도 근로여건이 열악한 영세 3D업체로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향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됨
- 2003년도의 고용촉진장려금 예산편성은 2001년도 결산액 및 2002년도 5월 현재 실적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년대비 62.2% 감소되었는바
 - 고용촉진장려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질 의)
15. 중장년 채용장려금 지원대상 3572명의 구체적 산출근거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 3572명에 대한 산출근거
 - 2001년도 실업자 총훈련 인원 중 40세 이상인자 1만 6951명이 동 장려금의 지원대상으로 가

정

- 실업자 훈련은 실업자재취직훈련, 취업훈련, 취업유망분야훈련임
- 2001년 실업자훈련 평균취업률은 35.7%이나 500인 이하 중소기업체로 대상자 제한, 기존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의 대상자 중복, 미신청자 등으로 1만 6951명 중 약 20%인 3572명이 수혜 받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 집행계획

- 중장년층 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다음 경우에 지급할 계획임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체(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이 인·지정한 재취직훈련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시 1년간 지원
 - 지급수준 : 채용 후 3개월은 60만 원, 그 이후 3개월은 4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20만 원
- 지급수준 결정과 관련해서는 채용장려금의 금액은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훈련수료 후 채용근로자수를 곱하여 지급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할 예정임
- 또한, 신청 및 지급 등 지급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할 예정임

(질 의)
16. 중장년채용장려금제도를 여타의 고용촉진장려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새로운 제도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으나, 40세 이후의 구직자의 채용을 꺼리는 등 인력수급의 불일치현상이 존재하고
 -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훈련종료 후 취업률은 높은 수준이 아님
 - ※ 2001년 12월 현재 실업자재취직훈련 : 36%, 취업유망분야훈련 : 29.4%(중장년층의 취업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취업에 애

로를 겪는 40세 이상자의 신속한 재취직을 지원하되,

- 실업자훈련의 효과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여타 고용촉진장려금과의 차이점

○현재 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제도는 고령자, 장기실업자, 여성 등 지원대상에 따라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 이번에 신설하는 중장년층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제도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과는 지원 목적, 지원요건, 지원대상, 지급수준 등에 차이가 있어 별도의 제도로서 신설한 것임

○우선 다른 장려금과 달리 지원대상업체를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추가 고용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며

- 대상 근로자도 최근 상시적인 구조조정하에서 조기퇴직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40세 이상으로 한정할 계획임

○장려금 지원기간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기타 채용장려금의 6개월보다 연장하여 1년간 지급하고

- 지급금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 장려금 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임

○또한 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채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함은 물론, 수료일로부터 시간이 짧을수록 훈련결과 활용이 용이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채용으로 한정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할 계획임

(손在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1.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음

(답 변)

○2001년 11월부터 1세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직기간동안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2002년 9월 현재 2491명에게 17억 원이 지원되어 당초 계획(7만 3000명, 357억 원)보다 부진한 상태임

※ 2002년 12월까지 4000명(30억 원) 예상 → 2003년 1만 명

※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장려금 별도

○2002년 9월 현재 산전 후 휴가자(1만 5964명) 대비 육아휴직자(2491명) 비율이 15.6%이나,

-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소득 계층의 활용율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월 30만 원(24.2%)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2001년 여성근로자 평균임금 124만 원의 16.1%)

○2003년 기금예산 편성 시 월 45만 원(여성평균임금의 36% 수준)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월 30만 원으로 조정되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중임

○그러나 3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육아휴직활성화 효과가 미흡하고, 매년 인상요구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 추가예산이 확보될 경우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별도 검토

※ 급여지급 방법은 정률제와 정액제가 있으나 45만 원을 정액제로 하였을 경우 휴직 전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질 의)
2. 신노사문화추진단체 재정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음

(답 변)

□사업의 필요성

- 우리 노사관계는 아직도 분배위주의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 불안한 노사관계는 직접적 경제손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기피 등 경제 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2001년 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2조 1200억, 200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노사관계 경쟁력 평가(47위/49)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나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참여에 소극적이며

- 또한, 그간 신노사문화사업이 간접지원 위주로 진행되어 노사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기존의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가 상

급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반해, 신노사문화추진단체의 재정지원은 개별사업장·지역·업종 단위의 노사협력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미 재정지원사업을 활발히 시행 중에 있음

□목적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각종 노사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함으로써

- 노사의 능동적 참여를 고양,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노동행정을 예방적·적극적 행정으로 전환하여, 분규수습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원대상사업 및 비용

○개별기업·지역·업종단위의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사협력 프로그램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인 바 예를 들면

- ▲ 노사 간 의사소통 증진 또는 의사결정과정 에 근로자 참여 고양
- ▲ 노사 공동의 관심사·문제·갈등의 해결
- ▲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을 위한 노사화합행사
- ▲ 작업장 혁신 또는 조직의 효율성 증대
- ▲ 갈등관리·협상·대화기법 향상 등 문제해결 능력 배양
- ▲ 기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 사업 등임

○지원하는 비용은

- ▲ 연구·자문·컨설팅·용역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 ▲ 교육·연수·회의·세미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 교재·VTR·CD 등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 ▲ 기타 노사화합행사 등 노사협력증진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방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시행기관 자체인력만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 우리의 경우 대상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

해 노동부 및 노동교육원, 공익, 노·사·학계대표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신청요건, 선정기준 등을 매뉴얼로 작성, 사전에 신청자들에게 공개하여 지원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임

□기존 한국노동교육원 각종 사업과 중복문제

○재정지원사업은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사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마련·시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노동교육원이 노사관계 전문교육 등 공공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노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프로그램과는 그 목적과 대상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다만, 한국노동교육원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 기존 노동교육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집행방안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전시성·선심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 합리적인 세부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 고려사항

- ▲ 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목표설정의 합리성
- ▲ 사업수행을 위한 노사의 자세
- ▲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소요비용 신청자 공동부담 여부
- ▲ 지원요구액의 적정성·건실성
- ▲ 최소비용 신청 여부
- ▲ 타부문의 선도적 역할 및 활용가능성
- ▲ 지원의 효과성(노사관계개선 기여도 및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또한 동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노사공동단체를 반드시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 기존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의결이나, 노사동의를 전제로 한 노사 일방 또는 노사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산출근거

○노사 공동의 문제 및 노사갈등해소를 위한 연구, 진단, 컨설팅 등

- 2000만 원*20회 = 4억 원
 - 작업장 혁신 및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사공동사업 등
 - 3000만 원*10회 = 3억 원
 - 노사파트너십 및 사업장 의사소통 증진을 위
한 노사간부·노사협의회위원 교육, 워크숍, 세
미나 등
 - 30만 원*1,000명 = 3억 원
 - 노사화합행사 등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지원
 - 2500만 원*20회 = 5억 원
 -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 및 기업의 경쟁력제고
프로그램
 - 2500만 원*20회 = 5억 원
-